

전임지도자운영규정

2020.11.19. 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와 대한장애인체육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전임지도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목별 선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협회에서 선임하는 전임지도자(이하 “전임지도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채용절차) ① 전임지도자는 협회의 공개채용에 의해 전문체육위원회의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채용하고, 협회장은 채용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 시 협회는 해당 시·도장애인체육권도협회에 공문으로 공지해야하고, 협회의 홈페이지에 최소 10일 이상(공휴일 포함)의 채용 접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협회는 채용하고자 하는 전임지도자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경기단체에 그 사실 유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종목의 비장애인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요건) 전임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도 경력이 있는자
3.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 지도 경력이 있는자
4. 해당 종목 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패럴림픽 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전임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회 및 회원종목 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12.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1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14.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5. 협회(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전임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전임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제6조(직무)

전임지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발굴·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
2.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협회의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4. 해당 종목의 국내·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
5.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
6. 기타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제7조(경기단체의 임무) 협회는 해당 전임지도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전임지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업무
2. 해당 전임지도자 관리, 업무 평가 및 지휘·감독 업무
3. 기타 전임지도자에 관한 제반 업무

제8조(채용계약) 전임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협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임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협회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전임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면직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할 경우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연간 업무 평가결과는 향후 전임지도자 계약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①전임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2. 친절·공정·청렴 의무
 3. 품위유지 의무
 4. 비밀엄수 의무
 5. 직장이탈금지 의무
- ②전임지도자는 협회장 및 협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협회는 매월 근태관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전임지도자는 선수육성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 및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④전임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 유관단체(경기단체 등)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⑤전임지도자의 세부적인 복무에 관한 규정(징계규정 포함)은 해당 협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⑥전임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 ⑦전임지도자는 계약 기간 중 장애인체육회 및 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성범죄 및 폭력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10조(급여) 전임지도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급여의 지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2. 급여의 지급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급여의 지급일은 경기단체 규정에 준한다.

제11조(복리후생) 전임지도자 활동에 관한 각종 복리후생비(각종수당, 교통비 등)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및 근태) 근무시간은 협회의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13조(월별 업무추진 실적 및 월별 훈련계획) ①전임지도자는 월별 업무추진 실적은 익월 10일까지, 월별 훈련계획은 전월 25일까지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월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②협회는 월별 업무추진 실적과 월별 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전임지도자의 직무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업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협회장과 장애인체육회장은 포상 할 수 있다.

제15조(성과평가)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전임지도자에 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제1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제4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대표’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